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74호
2021. 9. 17.(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2)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고시 제2021-94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95호) 7

공 고(1)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공고 제2021-957호) 8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48호) 15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56호) 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58호) 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59호) 35

공 람									
--------	--	--	--	--	--	--	--	--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2021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21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간판 개선과 지속적 유지 관리를 위해 광고물 등의 수량·위치·규격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제28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먹자골목(신탄진동로 7번길)
2. 지정구간 세부 도로명 주소 및 위치도: [붙임 지정현황]
 - 대청로 6, 8
 - 신탄진동로 7번길 55, 58, 59, 60, 61, 63, 64, 67, 69, 72, 74, 75, 76, 78
 - 신탄진동로 7번안길 2, 3
 - 신탄진로 810번길 6, 12, 13
3. 적용대상 :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

제4조(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하로 한다
- ②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에 있어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LED 등으로 광원이 직접 비노출에 한함)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③ 커튼 월 [Curtain Wall(비내력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게시틀을 설치하고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광고물의 주표시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한글 표기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 ⑤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문자,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적색류 또는 흑색류는 광고물의 50% 이내로 사용하며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⑦ 업소를 특정 짓고 차별할 수 있도록 엠블렘, 픽토그램 등 사용을 권장한다.
- ⑧ 신고 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①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일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건물의 외벽 훼손 방지 및 간판 교체가 용이하도록 입체형 간판은 게시틀을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틀은 광고물 세로 높이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건물의 외부 미관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간판의 글자크기는 65cm 이내, 가로크기는 최대 10m 이내 또는 가로폭의 80%, 세로크기는 80cm 이내, 최대 건물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① 1면의 면적이 0.36㎡이내이고, 두께가 0.2m 이하인 소형 돌출간판으로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 표시등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게시틀을 설치하여 연립형으로 건물의 벽면에서 동일한 크기로 위·아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일관되게 돌출시켜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의 좌·우측면 모서리 중 한쪽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접한 도로에서 건물 주출입구가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이거나 지하 또는 건물 구조상 다른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내로 한다.

제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① 창문 이용 광고물은 1층에 한하여 건물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로 안전띠 개념으로 한 줄로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20cm 이내로 가로 쓰기를 하여야 한다.
- ③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서 최대 1㎡이내로 한다.
- ④ 전광류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9조(표시금지 광고물) 옥상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입간판, 현수막은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 ① 정비시범구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 및 광고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세입자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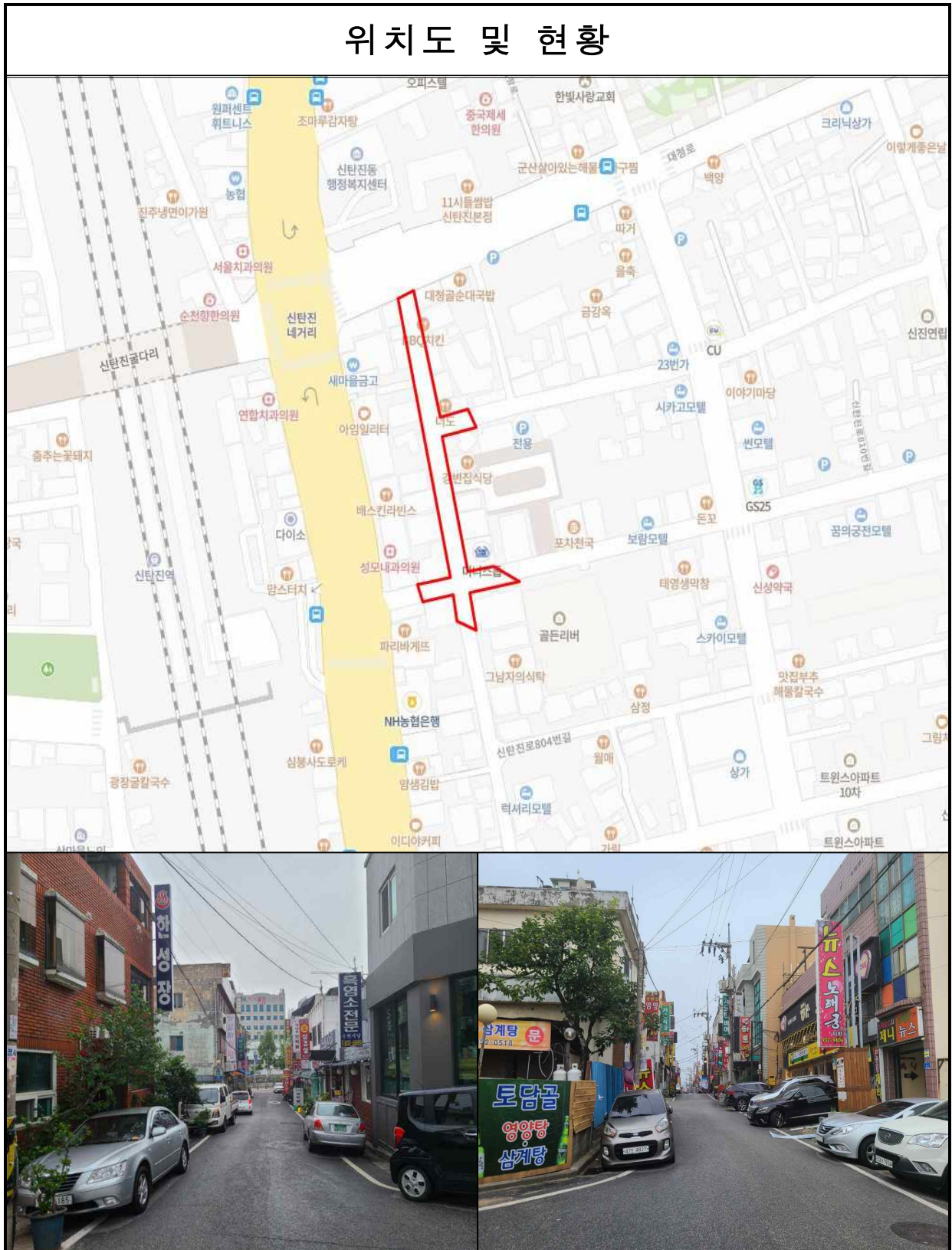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시 조례, 구 조례를 준용한다.

□ 위치도 및 현황

○ 신탄진동로 7번길(신탄진동 먹자골목)



□ 지정구역 상세주소

구분	지정구역(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
	대청로 8
	신탄진동로 7번길 55
	신탄진동로 7번길 58
	신탄진동로 7번길 59
	신탄진동로 7번길 60
	신탄진동로 7번길 61
	신탄진동로 7번길 63
	신탄진동로 7번길 64
	신탄진동로 7번길 67
	신탄진동로 7번길 69
	신탄진동로 7번길 72
	신탄진동로 7번길 74
	신탄진동로 7번길 75
	신탄진동로 7번길 76
	신탄진동로 7번길 78
	신탄진동로 7번안길 2
	신탄진동로 7번안길 3
	신탄진로 810번길 6
	신탄진로 810번길 12
신탄진로 810번길 13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293-6	오정로109번길 26	2021. 9. 17.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134-11	우암동로18번길 19	2021. 9. 17.	건물신축	우암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134-61	우암동로18번길 21	2021. 9. 17.	건물신축	우암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중리동 250-11	계족로521번길 91	2021. 9. 17.	건물신축	계족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331-1	상서당1길 34	2021. 9. 17.	건물신축	상서당 자연마을 명에서 유래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코자 하오니 응모 바랍니다.

2021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 종	채용인원	주요업무	비 고
기간제 근로자	행정보조	2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2. 공고기간: 2021. 9. 17.(금) ~ 2021. 10. 1.(금)

3. 응시자격

가. 채용 자격기준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자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되어 있는 자
-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등 전산자격증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⑦ 징계하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⑧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 전형

나. 2차 시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시행

※ 면접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 인품 및 성실성,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사고의 건전성·발전 가능성

5.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2021. 9. 17.(금) ~ 2021. 10. 1.(금) /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별관 4층) / (☎042-608-6872)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접수기간 내에 도착하는 우편물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반명함판(3×4cm)으로 부착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이력서 1부

라. 자격증(사본)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붙임 서식을 활용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0. 6.(수) /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시험(면접): 2021. 10. 8.(금) / 1차 합격자에 한해 장소·시간 연락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1. 10. 13.(수) 개별 유선통보

8. 채용기간 및 임금

가. 채용기간: 2021. 10. 18. ~ 12. 23.

나. 보 수: 시급9,270원, 일급(8시간) 74,160원 (주차 및 월차 적용)

9. 기타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 결정 이후에도 부적합한 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근로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1일전에 개별통지 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6872)로 문의 바랍니다. 끝.

응 시 원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합격 또는 고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고용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 덕 구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사 진 (반명합판) (3cm× 4cm)
			(한자)			
	응시 직종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주 소			전화 번호	· 자 택: · 핸드폰:	
	최종학력	학교(졸업)				
	경 력 (최 근)	근무기간	근무처명		담당업무	

첨부 : 1. 자기소개서 1부. 2. 이력서 1부. 3. 전산자격증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간 인 -----

면접당일 응시표를 왼쪽가슴 에 부착	응 시 표			사 진 (반명합판) (3cm× 4cm)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응시직렬	생년월일			
행정보조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 응시동기 :
- 자기소개(구체적으로 작성)

-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E-mail 주소 :
- 기타

응시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규율 내용에 맞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라.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마. 센터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3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석봉동)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전화 : 042-608-5444, FAX : 042-608-3851, E-Mail: sej091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자 서은정(전화: 042-608-5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법 제15조 3제4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95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과 맞추어 시행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띄어쓰기 함(안 제명).

나.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중 학교장 추천서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다. 장학금 신청 대상이 대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장학금 신청서와 지급신청서를 일원화하여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 함
(안 제4조제2항·제3항 삭제,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3호서식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서면, 직접방문: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자치분권과 자치행정팀
- 2) 전 화: 042-608-6512
- 3) F A X: 042-608-3822
- 4) E-mail: hsl0207@korea.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자치분권과 담당자 (042-608-6512)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학금 신청서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동 통장)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통장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장 학 금 지급계좌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예금주	
장 학 생 인적사항	학 교 명 (학과)	학교		학년
	성 명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보호자와의 관계			
	성적 또는 특기개요			
<p>「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덕구청장 귀하</p>				
구비 서류	1.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또는 특기 증명서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통장사본 1통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전광역시 대덕구</u> <u>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u> <u>시행규칙</u></p> <p>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u>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의 추천서 1통</u></p> <p>3. (생 략)</p> <p>제4조(선발) ① (생 략)</p> <p>② <u>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u> <u>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u> <u>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u> <u>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u> <u>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u></p>	<p><u>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u> <u>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u></p> <p>제2조(장학금의 신청)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선발)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육아 여건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여성친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담당할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운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육아복합마더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이용료등의 납부, 감면, 반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 여성가족과

(전화 : 042-608-6781, FAX : 042-608-3836, E-Mail: ohminhe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영희(전화: 042-608-67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친화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장난감도서관
3. 커뮤니티공간
4. 공유부엌
5. 육아도서관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취업·창업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인문·교양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연계 등의 지원
3. 지역의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성장 지원사업

4. 영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지원사업
5.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사업
6.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자에 대한 교류 장소 제공
7.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조(센터의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장난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려는 경우
3.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6조(이용료등의 납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전액
4. 이용자가 이용일 전날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 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9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해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이용료 및 장난감 대여료(제6조 관련)

가. 시설 이용료

구분		기준시간	이용료	비고
다목적실 (소모임 및 교육)	회의실 (강의실)	1회 2시간	30,000원	
	빔 프로젝트	1회 2시간	5,000원	
	냉난방기	1회 2시간	20,000원	
공유부엌		1회 3시간	기본(1명) 10,000원 추가 1명당 5,000원	
<p>※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p>※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p> <p>※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p>				

나. 장난감 대여료

구분	기준	연회비	비고
장난감	1일 1회 2개 (대여기간 14일)	일반회원 10,000원	연체료 1일1개당 1,000원
	1일 1회 2개 (대여기간 21일)	통합(기관)회원 20,000원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재정비함(안 제3조).

- 나.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면제 대상, 면제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2 및 제3조의3).
- 다. 법령에서 정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를 재정비함(안 제9조).
- 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도시재생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도시재생사업단 (전화: 042-608-5395, FAX : 042-608-3850, E-Mail: so534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도시재생사업단 담당자 소정희(전화: 042-608-5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산책로, 광장”을 “다목적공간”으로, “여가”를 “문화·여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2.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6.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10조 중 “다수”를 “여럿”으로, “설치 및 인적구성,”을 “설치, 인적구성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를 “민간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차례”를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 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